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창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42

발의연월일: 2021. 3. 12.

발 의 자:윤창현·최형두·추경호

양금희 · 김기현 · 윤한홍

이주환 • 유의동 • 권은희

권영세 · 전주혜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.

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, 합리성,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 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의 개선을 도모하고,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8 부터 제24조의10까지 신설, 제36조).

법률 제 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의8부터 제24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8(동의의결)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원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(이하 이 조에서 "신청인"이라 한다)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(이하 이 조에서 "해당 행위"라한다)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,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한다.

- 1.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
- 2.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
-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1.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
- 2. 해당 행위의 중지,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

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

- 3. 그 밖에 수급사업자,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
-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(이하 "시정방안"이라 한다)이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(이하 "동의의결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.
- 1.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 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
- 2.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
-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,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 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.
- 제24조의9(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)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.
- 제24조의10(이행강제금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

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 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이행강제금의 부과·납부·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36조 중 "아닌 위원"을 "아닌 위원 및 제24조의9에 따른 이행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제 24조의9 중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"제90조 및 제9 1조"는 2021년 12월 29까지는 같은 법 "제51조의3 및 제51조의4"로 각각 본다.

② 제24조의10제2항 중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"제 16조제2항 및 제3항"은 2021년 12월 29까지는 같은 법 "제17조의3제 2항 및 제3항"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4조의8(동의의결) ① 공정거래
	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
	있는 원사업자 또는 사업자단
	체(이하 이 조에서 "신청인"이
	라 한다)는 해당 조사나 심의
	의 대상이 되는 행위(이하 이
	조에서 "해당 행위"라 한다)로
	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
	자발적 해결, 수급사업자의 피
	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
	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
	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
	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. 다
	만,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
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
	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
	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
	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	1.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
	건에 해당하는 경우
	2.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
	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
	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

- 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
 사실관계
- 2. 해당 행위의 중지,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 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
- 3. 그 밖에 수급사업자,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 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정방안
-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(이하 "시정방안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(이하 "동의의결"이라 한다)을 할 수있다.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- 1.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
- 2.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 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
-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, 누구든지 신청인이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.

제24조의9(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)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.
제24조의10(이행강제금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

기한	<u> </u>	지난	날부	-터	1일	당	200
<u>만원</u>] 0]	하의	०) रं	행강	제금	을	부
과힐	<u></u> 수	있다	. <u>.</u>				
2	이행	강제	금의	부	과. '	납부	징
<u>수</u>	및	환급	<u>'</u>	등에	관	하여	녀는
	금점규	제	및 -	공정	거리	에	관
<u>한</u>	법률_	」저]16조	:제2	항	및	제3
항을	근 준	용한대	<u> 구.</u>				
36조	<u>:</u> (벌	칙 적	용에	서	공두	- 원	의
제)							
							<u>-0}</u>
<u>닌</u>	위원	및	제24	4조의	<u> 1</u> 9여) t	<u>다른</u>
이항] 관리	업트	구를	담당	하기	식나	담
당히	<u> 였던</u>	사	람				